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소 방 청 장

I 시험개요 등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한국사,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구 분	선발예정인원 (총 30명)	필기시험(선택형)	
		필수과목	선택과목(2과목)
인문사회계열	15명 (남성 13, 여성 2)	헌법, 행정법 한국사, 영어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15명 (남성 13, 여성 2)	헌법, 자연과학개론, 한국사, 영어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2 시험일정

구분	시험절차	장소공고	시험예정일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원서접수: '25. 12. 8.(월) 10:00 ~ 12. 15.(월) 18:00			
1차 시험	필기시험	'26. 1. 7.(수)	'26. 1. 17.(토)	'26. 2. 6.(금)
2차 시험	체력시험			'26. 2. 13.(금)
3·4차 시험	종합적성검사 신체검사	'26. 2. 6.(금)	'26. 2. 10.(화) ※ 신체검사서 제출 13p 참고	'26. 3. 12.(목)
	면접시험	'26. 2. 13.(금)	'26. 2. 25.(수) ~ 2. 26.(목)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청 누리집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http://gongmuwon.gosi.kr>)을 통하여 변경 공고함

II

응시자격

1

자격 기준일

분야		기준일
응시 결격사유 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26. 2. 26.(목)
운전면허 ²⁾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³⁾		
응시연령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기준(2026년도)
필기시험 대체 성적	한국사	유효기간 없음
	영어 ⁴⁾	(성적 사전등록자) '21. 1. 1. ~ '26. 1. 16. (성적 사전미등록자) '24. 1. 17. ~ '26. 1. 16.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26. 1. 16.

1) 응시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해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3)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한국사, 영어 포함)

3), 4) 필기시험 대체 과목(영어) 및 한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 인정기간과 관련, 소방청 공고 제2024-164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주요 개정사항 공고」와 소방청 공고 제2025-186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어학성적 사전등록 변경 공고」참고

※ 선발시험 합격한 후 교육훈련('26. 3.~ '27. 3.)을 마친 사람만 채용후보자로 등록

2

신체조건

가.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나.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7

- ▶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함
- ▶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함

3

응시연령

연령	생년월일
21세 이상 40세 이하	1985. 1. 1. ~ 2005. 12. 31.

▷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복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 나이	1세	2세	3세

4

응시결격 및 복수국적 임용

가. (응시결격) 결격사유 해당한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 2)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4)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나. (복수국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에 제출(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 2) 「국적법」 제11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

5

운전면허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포함) 소지

나. 보유기준일은 최종시험예정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면 응시자격이 박탈됨

III

원서접수 등

1

접수방법

가. 기간: '25. 12. 8.(월) 10:00 ~ 12. 15.(월) 18:00

나. 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수수료를 결제(납부) 해야 접수가 완료됨

※ 시스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원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 내용 변경 가능, 최종제출 완료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3)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것

4)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시험 단계마다 신분증, 응시표,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소지할 것

※ 인적사항 변동 완료자는 면접시험일부터 최종합격일 기간에 증빙자료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5호 교육훈련담당관 원서접수 담당자 앞 (우 30128)

다. 원서접수 취소: 원서접수 기간 중 취소 가능

※ 추가 접수 취소 기간: '26. 1. 7.(수) 10:00 ~ 1. 14.(수) 18:00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기준: 반명함(3.5cm×4.5cm), 사진 파일(JPG), 해상도(100DPI 이상)
 - 사진등록: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및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제복 등) 등록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동물·식물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면접 시 블라인드 테스트로 前 직장 등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거짓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채용시험 단계마다 같은 사진을 사용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 교체 불가
-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사진은 면접시험까지 사용함

2

서류접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제출기간	제출방법
①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전등록자제외)	필기시험 응시자	원서접수 기간 ('25. 12. 8. ~ 12. 15.) 추가접수 기간 ('26. 1. 12. ~ 1. 16.) ※ [마이페이지>응시현황> 한국사/어학성적 추가등록]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②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③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④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참고	체력시험 합격자	'26. 2. 13. ~ 2. 26.	
가. 모든 접수 마감 시간은 접수기간 마지막 날 18:00까지임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26. 1. 16.)까지 사전등록 후 추가접수 가능 비고 다. 주민등록표초본 및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제출할 필요 없이 시험실시기관(소방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하여 확인 예정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에 대해 미동의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 요청 예정				

3

원서접수 결과

구분	공개일시 및 공개방법
접수증 확인	○ 일시: 원서접수 기간 ○ 내용: 접수증 출력 후 접수번호, 성명, 응시분야 등 확인 ※ 접수증은 원서접수 정상 등록여부 확인용이며, 응시표가 아님
원서 접수 결과 안내	○ 일시: 2025. 12. 17.(수) 14:00 ○ 내용: 응시분야 및 남·여 응시자 현황 ○ 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4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TOSEL
	PBT	IBT					
기준점수	530 이상	71 이상	700 이상	340 이상	65 이상 (level 2)	625 이상	690 이상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1) (사전등록자) '21. 1. 1.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필기시험 대체 과목(영어) 인정기간과 관련, 소방청 공고 제2024-164호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주요 개정사항 공고」 참고
- 2) (사전미등록자) '24. 1. 17.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토셀(TOSEL),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G-TELP)에 한하며,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4)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1)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본을 첨부할 것. 다만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26. 1. 12.(월) 10:00 ~ 1. 16.(금) 18:00]에 반드시 등록(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해야 합니다.
- 2)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이 정확히 표기된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사용해야 함.(여권 사본 첨부)
- 3)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점수가 다르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성적 소명 대상자는 개별 통지), 원본 제출 및 소명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4) 플렉스(FLEX)는 국가 공인을 받은 「듣기 및 읽기」 평가만 해당합니다.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만 인정합니다.
- 2)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26. 1. 16.)까지 기준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이 정확히 표기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26. 1. 12.(월) 10:00 ~ 1. 16.(금) 18:00]에 반드시 등록(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해야 합니다.

6

한국사 · 영어능력검정시험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26. 1. 16. 18:00)까지 기준점수(등급)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미제출한 필기시험 응시자의 채점

나. 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등급)는 필기시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할 때는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점적용

가. 대상자 및 비율 ※ 해당자는 필히 제출기간 확인 후 기간내 제출(page 5 참조)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¹⁾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²⁾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³⁾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	최종 환산점수에 적용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나. 가점 적용

-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시험에 적용하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상자 등’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에 적용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2)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체력·면접은 총점의 40% 이상인 자에게 적용
- 3)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4)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26. 1. 16.)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시 대상 항목을 표기한 사람만 적용됨(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5) 본인의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을 사전에,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이나 가족)은 보건복지부에 확인 후 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 불가
 - ※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의사상자 등 확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 6) '자격 등 소지자'의 자료 제출기한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26. 2. 26.)로 하며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7)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 사이트: 큐넷(www.q-net.or.kr/☎1644-8000)

8

응시수수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

가. 응시 수수료: 7,000원

※ 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시 추가 비용 발생

나. 응시 수수료 반환: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거나 추가 접수 취소기간('26. 1. 7.(수) 10:00 ~ 1. 14.(수) 18:00)에 취소를 한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 본인 부담)

다.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IV

시험절차

1 1차 시험: 필기시험

가. 시험일시: 2026. 1. 17.(토) 10:00 ~ 11:40 (100분)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01)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장소공고: 2026. 1. 7.(수) 14:00 ~

1) 응시표 출력: 2026. 1. 8.(목) 09:00부터 출력 가능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응시표 출력)

2)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다. 시험점수: 과목당 100점 만점, 100문항(과목당 25문항)

라. 시험과목: 4과목(필수 2, 선택 2) ※ 한국사,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채용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인문사회계열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자연계열	헌법,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1-1 출제문제 공개 및 문제 이의제기

가. 답안공개: 2026. 1. 17.(토) 14:00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나. 이의제기: 2026. 1. 17.(토) 14:00 ~ 1. 18.(일) 18:00

이의제기 제출 시 유의사항

- ▶ 기 간: 1. 17.(토) 14:00 ~ 1. 18.(일) 18:00
 - ▶ 방 법: '서식 1'에 의거하여 스캔본 이메일 제출(thsdrhd119@korea.kr)
 - ▶ 자격요건: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만 가능
 - ▶ 내 용: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문의
- ※ 응시자는 승진시험 [서식 1] 필기시험 문제 이의제기 작성 첨부(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 ※ 이의제기는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모든 공란을 빠짐없이 기입한 후, 서명한 서식의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하나의 서식에는 1개 문항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각 문항별로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접 손글씨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자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 스캔 후 반드시 파일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흐리거나 일부가 식별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필기시험 점수공개 및 이의제기

- 가. 점수공개 일자: 2026. 1. 28.(수) 14:00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나. 이의제기 기한: 2026. 1. 28.(수) 14:00 ~ 24:00
다. 이의제기 방법: '서식 2' 작성 후 스캔본과 응시표를 이메일로 제출
(yes2025@korea.kr)
라. 이의제기 답변: 2026. 1. 29.(목)까지

1-3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합격자 공고

- 1) 공고일시: 2026. 2. 6.(금) 14:00
- 2) 공고방법: 소방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3) 공고내용: 필기시험 합격자

나. 합격자 결정: 총 64명(계열별 선발예정인원의 남자 2배수, 여자 3배수)

- 1)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남성(2배수)		여성(3배수)		남성(2배수)		여성(3배수)	
	선발인원	필기시험 합격인원	선발인원	필기시험 합격인원	선발인원	필기시험 합격인원	선발인원	필기시험 합격인원
인원	13	26	2	6	13	26	2	6

- 2)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처리

2 || 2차 시험: 체력시험

가. 시험일시: 2026. 2. 10.(화)

- 1) 09:00 ~ 12:10: 신체검사서 제출 / 종합적성검사
- 2) 13:10 ~ 18:00: 체력시험

나. 장소공고: 2026. 2. 6.(금) 14:00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다. 대 상 자: 필기시험 합격자

라. 시험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마. 평가배점: 총점 60점(종목별 10점 만점)

바.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5 적용

2-1 도핑테스트

가. 채취일시: 2026. 2. 10.(화) → 체력시험 종료 후

나. 채취대상: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2~5%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다. 채취시료: 소변 90ml 이상

라. 시료검사: 시료 소변을 장비이용 요비중 검사(시료 봉인)

마. 동의서 징구: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바. 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후 부정행위자 조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 시 선발시험 합격은 취소함

2-2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2026. 2. 13.(금) 14:00

나. 공고방법: 소방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다. 합격기준: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3 | 3차 시험: 신체검사

※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발급은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시험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체검사 받기를 권고함

가. 제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서류: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다. 검사방법: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라. 제출방법: **체력시험 당일 제출**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6. 2. 26.)** 까지 등기우편 제출

- ▶ 세종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5호 교육훈련담당관 원서접수 담당자 앞(우 30128)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정상 접수한 것까지 인정함(봉투 겉면에 찍힌 접수일 또는 등기번호 조회 시 접수일 기준, 민간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마.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26. 2. 26.)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의 '판정보류'에 대한 **별도의 재검사 기간을 두지 않으므로** 수검 소요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사. 합격발표: 최종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신체검사 유의사항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음
-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런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함
 - ※ 약물검사(TBPE)는 3~4일 소요되며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 ▶ '색각' 이상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색각경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은 후 시험응시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함
- ▶ 병원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 후 검사서 발급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압인 또는 계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이 되어 있을 것

4 4차 시험: 면접시험

4-1 종합적성검사

- 가. 시험일시: 2026. 2. 10.(화) 09:00 ※ 체력시험 당일 오전 시행
- 나. 장소공고: 2026. 2. 6.(금) 14:00
- 다. 검사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라. 검사방법: 체력시험 전 오프라인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응시 불가

4-2 면접시험

- 가. 시험일자: 2026. 2. 25.(수) ~ 2. 26.(목) / 기간 중 하루
- 나. 장소공고: 2026. 2. 13.(금) 14:00
- 다. 시험대상: 종합적성검사 응시자 중 체력시험 합격자
- 라. 시험방법: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평정 점수				
발표면접	① 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 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 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마.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불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5

최종합격자 결정

5-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2026. 3. 12.(목) 14:00

나. 공고방법: 소방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필기시험 50% + 체력시험 25% + 면접시험 25%에 가점을 반영한 성적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라. 합격증명서 발급 ※ 희망자(수수료 없음)

1) 발급일자: '26. 3. 13.(금) ~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 종료 시까지(1년)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yes2025@korea.kr/044-205-7289)

5-2

최종합격자 교육

가. 교육장소: 중앙소방학교

나. 교육기간: '26. 3월 ~ '27. 3월(1년)

※ 신임교육과정 미입교 시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1 공통사항

가.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

- ▶ 인 정: ①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 ④ 국가보훈증
- ▶ 불인정: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지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 등
 - * 여권 정보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
 - ※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 모바일 신분증은 필기시험에는 불가하나 체력·면접시험에는 가능

나. 응시자는 소방청에서 지정한 시험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예시)

- ▶ 시간 기준: 10:00 시험은 08:20에 개방하여 09:30:00까지 입장 가능
09:30: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
- ▶ 입구 기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
 - ※ 지정시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불합격 처리)

라.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및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바. 문자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에 거짓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할 목적으로 등록하면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나.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는 응시자 휴대전화 번호로 작성)

라. 시험실시권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파일 등록)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가점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바.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사.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의 가점은 만점의 5%, 3%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10%, 5%를 가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원서접수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산점의 거짓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해야 합니다.

3

필기시험

가.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통과시간 기준입니다.
- ▶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전자기기(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1)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2)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off)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2)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 자필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아.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에는 채점에 오류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카.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통신기기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등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합니다.

4 | 체력시험

-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 시험일자 및 시험시간 변경 불가 / 신분증 미지참자 시험응시 불가
-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체력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라.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 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마.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

바.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시행합니다.

※ 체력시험 응시자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 실시

사. 체력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면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양성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응시자는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도핑테스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함

자.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체력시험 등록 시 영상 촬영 동의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체력시험 중 촬영되는 동영상은 시험판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응시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 ▶ 체력시험 촬영 동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시험 종료 후 삭제합니다.
-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촬영된 영상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장비의 고장 등으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종목 판정관의 최초 판정 결과에 따릅니다.

카.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며,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타. 체력시험 전 또는 실시 중에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체력시험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보조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장비 착용 등 시험 유의사항

- ▶ 스포츠 테이핑, 상처 보호용 밴드는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 ▶ 탄산마그네슘 가루, 붕대, 복대 등 보호대 사용 금지
- ▶ 악력,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 코팅 장갑 사용 가능
-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후드티 등) 및 용모(긴 손톱, 긴 머리)는 시험 운영과정에서 제재 예정
- 긴 머리는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체력측정 기기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
- ▶ 물·음료 이외의 다른 액체류 제품은 섭취 금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제4호“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해당

하. 체력시험 채점에 관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력시험 채점표 유의사항 안내

- ▶ (채점) 전산 판독(이미지스캔) 결과에 따름
- ▶ 계산된 총점 등 기타 비고란에 불펜 등으로 기재된 숫자는 판독하지 않음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제7호에 의거, 채점표를 고의로 수정하는 등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시험을 정지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응시자) 매 종목 득점 점수를 확인하고 최종 응시자 확인란에 서명해야 함
- 응시자는 측정기록점수가 득점 마킹란에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 시험 종료이후 개인별 점수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거.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에서는 흡연이 불가합니다.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신체검사

- 가. 신체검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검사서류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사.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계인 처리, 담당 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6

서류제출

- 가. 모든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거짓,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나. 제출서류 확인 결과 거짓 사실로 판명되면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합니다.

7

종합적성검사

- 가. 종합적성검사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종합적성검사 관련 자료 일체는 외부 반출이 금지됩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전자기기(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사.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별 인·적성 결과는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생년월일 및 응시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시험종료 직후에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그 외의 사항은 필기시험에 준하여 시험절차를 진행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 면접시험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면접시험의 세부 운영 방법은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라. 시험장 내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이 금지되며 응시자 교육시간에 수거한 후부터 면접이 끝날 때 까지 소지할 수 없고 시험 종료 후 반환될 예정입니다.
-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면접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 중 전자·통신장비 소지자(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 바.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고 시험시간 중 외부 인과의 접촉은 금지되며, 시험 종료 후 대기 중인 응시자와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 아.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자. 면접복장은 격식을 차린 확실적인 옷차림은 권장하지 않으며,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평상복, 노타이)”을 권장합니다. 또한, 면접복장은 면접평가에 “전혀”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차. 면접시험에 대리 시험을 의뢰·응시한 사람 등 부정행위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시험장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해야 하며, 시험장은 금연 구역으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최종합격자

-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소방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합니다.
- 다.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고 매월 소방위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합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4조제3항

- 본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6 ~ 7292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 이의제기

문 제 문 의	성 명	홍길동	응시번호	
연 락 처	휴 대 전 화	010 - 1119 - 1119		
	전 자 우 편	fire119@korea.kr		
응 시 분 야	응 시 분 야	인문사회계열		
문 의 과 목	해 당 과 목	행정법		
	문 항 번 호	10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 손글씨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자로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의견>

위와 같이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제출합니다.
성명: 홍길동(인)

소방청장 귀하

【서식 2】 점수 이의제기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점수 이의제기

시험명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분야	자연계열
응시번호	0000-0000
응시자 성명	000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0000-0000
전자우편	fire119@korea.kr
공개점수/ 본인점수	사전 공개점수(A과목 80, B과목 60, C과목 70, D과목 60, E과목 50, 가점 00) 본인 채점점수(A과목 85, B과목 65, C과목 75, D과목 65, E과목 55, 가점 00)

<이의제기 사유>

위와 같이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점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제출합니다.

성명: 홍 길 동(인)

소방청장 귀하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 접수자 인적사항

시 험 명		응 시 계 급	
성 명		응 시 번 호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2. 정정 신청 내용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3. 정정 사유

4. 첨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서식 4]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지 8]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 분야	성명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시력		색 신		청력		정상	
맨눈	좌: 우:	(색 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 환			
치 아				호흡기질 환			
간 질 환				신경질 환			
소화기질 환				피부질 환			
순환기질 환				정신질 환 (TBPE 검사 포함)			
비뇨기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input type="checkbox"/> 합 격 <input type="checkbox"/> 불 합 격 <input type="checkbox"/>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	--	-----------------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처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약물(TBPE)검사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상(음성)이면 정상으로 작성하시고, 이상소견(양성) 있을 시에는

불합격 사유 또는 판정보류 사유에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표 7에 의하여야 합니다.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생 년 월 일		응 시 번 호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

.....

.....

.....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

.....

.....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할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 명		전 공 분 야	
주 소		이 메 일	
전 화		팩 스	
서 명		날 짜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도핑테스트 동의서

■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응 시 번 호		연 락 처	

본인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